

신한카드 가맹점 약관

2017. 4. 1 시행

-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승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지금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닙니다.

제13조 [대금의 환입 및 상계]

-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이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 범위 내일경우에는 그 금액에 현재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는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거래처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 또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는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또는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 [대금의 지급 보류]

-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승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 ③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신장치, 내부자첩보유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카드 표면에 서명이 없거나, 카드 표면에 기재된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현저히 구별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기담 또는 협조한 경우
4.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5. 카드사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③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과의 분쟁]

-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과·단계판매·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승달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 어음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려운 경우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작표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작표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거나 1개월 이전까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 [약관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서면,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니다.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배지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망법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음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정 관할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일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②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품 중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속약관

제1조 [매출전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 발행카드인 경우 신용판매한 날로부터 MasterCard는 6일, Visa는 8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2조 [매입 대행]

- ① 「매입대행」이라 함은 카드사와 별도 계약에 의해 타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이하 「타사카드」)와 그 회원이 「타사회원」이 가맹점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매입, 가맹점대금지급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리/의무 사항은 「타사카드」 또는 「타사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제4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